# 해양 •항만 •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이 순 태

## KOREA

##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해양 - 항만 -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이 순 태

# 해양 - 항만 -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br>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Maritime and Fisheries for Policy Linkages 

연구자 : 이순태(연구위원)<br>Yi, Sun-Tae

2014. 10. 31. 

한굽벳원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연구의 배경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 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전부 개정(2013.3.23)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항만에 관한 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사무를 해양 수산부의 소관사무로 이관

○ 위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련 사무를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관련 사무를 분리하 여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로 하는 개별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 나, 이는 해양•항만 관련 법률이나 수산 관련 법률에서 주무관 청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직법적 분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관련 법률을 모두 포함하는 것 도 아니었음

○ 해양•항만 및 수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및 연안이라고 하 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차 원에서의 주무관청의 분리만으로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 책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 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상호 참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이 필요
$\square$ 연구의 목적

○ 바다 및 연안을 정책의 공간적 범위로 공유하는 해양•항만 정 책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제를 정비하고, 수산업의 활동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요 내용

$\square$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 •항만•수산 조직의 변천

- 해양수산관련 조직은 1948년 상공부(수산국)에서 출발하여 농림부 (수산국), 농림부(수산청), 해양수산부(1996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항만관련 조직은 1976 년 건설부(항만시설국+교통해운국)에서 출 발하여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1996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 부로 변천

○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996년 신설된 이후 2008년 페지되었고, 2013년 다시 신설되었는바,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 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가 신설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가 각각 농림축산 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음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 3 조제 1 호는 해양이라 함은＂대한민국 의 내수•영해 •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 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항만법 제 2 조제 1 호는 항만이란＂선박의 출입，사람의 승선•하 선，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 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되고 있음
－수산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수산업，어업 등의 정의를 종 합하자면＂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제정•공포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은 91개 법률， 95 개 시행령， 102 개 시행규칙으로 총 288 개이며，그 중 국토교통부（11개），농림축산식품부（64개），환경부（6개），법무부 （2개），안전행정부（1개）와 공동소관하고 있는 법령은 총 84 개이다．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기본법으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존재하며，개별법으로 는 상당한 어촌개발 관련 법률이 존재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는 다양한 행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정계획은 목표설정과 수단종합성을 가지고 있으며，통 합기능과 이해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행정계획을 조사하 여 법제개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square$ 해양 ．항만 • 수산 법제 개선방안
○ 기본법의 정비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 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두 기본법을 두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방향，둘째，기 본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이 있음
－현행 기본법 체제를 유지한다면，「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며，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해양기본법＇또는 ‘해양정책기본법＇으로 개정．수산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어업•어 촌 기본법」 또는 「어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어업＇은 수산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수산업 전체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용어 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을「수산업•어촌 기본법」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농업과 수산업은 1 차 산업，농촌과 어촌의 공간적 범위 공유와 같은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종사자（농민과 어민），활동의 내용
(경작과 어로•양식), 산물의 특성(농산물과 수산동식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농지와 어장•바다)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율내용이 다르게 됨

- 농업 및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 한 법률은 그 산물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 업관련 법률에서 분리
- 수산사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던 시기에 법제적으로 상당한 정비가 있었으며, 수산사무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농업 분야 법제를 적극적으로 본따르기할 필요

○ 해양과 수산 법제의 통합

- 해양•항만•수산의 정책 연동을 위해서는 해양, 항만, 수산으 로 구분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규율대상이나 규율분야의 유사 성을 중심으로 법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연동을 촉진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III. 기대효과

$\square$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
$\square$ 조직 및 법률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업무의 비효율성,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바다의 가치 극대화에 기여

주제어: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해양법제, 수산법제

##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square$ Background of this study

O To extend the new growth engine for promoting the creative economy to oceans and to link port and fisheries policies togeth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as wholly amended on 23 March 2013.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has been newly founded to take over the previous servic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A) related to oceans and ports and the previous services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FAFF).

O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mendment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certain individual laws have been amended to separate and transfer the oceans related services of the MLTMA and the fisheries related services of the MIFAFF to the MOF. However, such amendments did not include all related laws as they were mainly designed to separate the organizational legislation for defining the MOF to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transferred services in the laws related to oceans, port or fisheries.

O The separation of a responsible ministry in the organizational laws that was effected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f oceans or coasts where maritime, port or fisheries
activities are perform cannot support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or extending the new growth engine to the oceans through an enhanced link between the policies related to oceans, ports and fishe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s to increase the cross reference ability of the related laws so that the policies for oceans and ports and those for fisheries may be interoperated systematically.

Purpose of this study

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so that the policies for oceans and ports and those for fisheries may be interoperated by streamlining the legislations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while streamlining the legislation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use of space so that the policies for oceans and ports and those for fisheries may be interoperated as they share the spatial scope of oceans and coasts.

O In so doing,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ceans, ports and fisheries and the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 П. Main Contents

$\square$ Changes in organizational legislations concerning oceans, ports and fisheries

O History of changes in organizations concerning oceans, ports and fishers based on amendments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The organization concerning oceans and fisheries that started out as par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Fisheries Bureau) in 1948 has evolved into the current MOF vi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ies Bureau),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ies Agency), MOF (1996), and the MIFAFF.
- The port-related organization that started out as par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Port Facility Bureau + Ministry of Transportation Maritime Transportation Bureau) in 1976 has evolved into the curr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the MOF via the MOF (1996) and the Korea Maritime and Port Administration.

O The MOF that had newly been founded in 1996 but abolished in 2008 was founded again in 2013 based on amendments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MOF was newly founded to enhance the convergence effect of ocean related functions by interlinking the policies for oceans and ports and those for fisheries while actively addressing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 MIFAFF and the MLTMA were reorganized in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d the MOLIT respectively.
$\square$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islations concerning oceans, ports and fisheries

## Concept of oceans, ports and fisheries

- Article 3 (1)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defines "The term "sea" means the sea area such as inland waters,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tc.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to extends the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a area wherei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her people may take part for its development, utilization or preservation under the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her Constitution, or the generally-approved international statutes."
- Article 2 (1) of the Harbor Act defines "The term "harbor" means an establishment with facilities installed for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the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of passengers onto and from ships, and the loading, unloading, storing, handling of cargos, facilities for water-friendly marine activities, and facilities for the generation of added value, such as assembly, processing, packing, and manufacturing of cargos."
- Though fisheries is not defined under any statutes, the definition of fisheries and fishing industri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Capture or raising of marine animals or plants, or manufacture or processing of food materials, animal feeds, fertilizers, glues, oil or leather using marine animals or plants as materials directly or indirectly."

O Current legislations concerning oceans and fisheries

- The statutes promulgated as of 31 October 2014, the enforcement of which the MOF is responsible include total 288, broken down
into 91 acts, 95 enforcement decreases and 102 enforcement rules. The MOF shares the enforcement of total 84 statutes among the above 288 statutes with other ministries - the MOLIT (11), the MAFRA (64), the Ministry of Environment (6), the Ministry of Justice (2) and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
- The MOF i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wo framework acts -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Fisheries,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It has quite a few individual acts concerning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O Administrative plans for statutes belonging to the MOF

- Diverse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included in the statutes belonging to the MOF have objectives established and inclusiveness of means. As they perform functions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f interests, they may be surveyed and utilized as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legislations.
$\square$ Ways to improve legislations concerning oceans, ports and fisheries

Improvement of framework acts

- The directions for enhancing the convergence effect of ocean functions by interlinking the policies for oceans and ports and those for fisheries will be either first, to amend some part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having two framework acts or second, to unite the two framework acts into one.
- If the current structure of two framework acts, the Framework Act on Development of Oceans and Fisheries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certain comprehensive provisions on the reasonable maintenance, preservation, development or use of oceans and marine resources. To denote the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more clearly, it should be renamed into "the Framework Act on Oceans" or "the Framework Act on Marine Policies". In the area of fisheries, a new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or a new Framework Act on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may enacted to accommodat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Fisheries,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Fishing industry" may not be a terminology that can hardly be use to accommodate the fisheries in the entirety as "fishing industry" is understood to mean capture or raising of marine products. Therefore,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Fisheries,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should be renamed into a new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or a new Framework Act on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O Separation from or conformance to the legislations concerning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Agriculture and fisheries share certain common characteristics that they both are primary industries and the farming and the fishing villages should coexist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land. However, their regulation contents differ as they differ in terms of those engaged in the two industries (farmers and fishermen), contents of their activities (cultivation and fishing or raising),
characteristics of their products (farm produces and marine animals or pla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where their activities are performed (farm land and fishing grounds or sea).
- The statutes concerning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of farming or fishery activiti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tatutes related to agriculture considering their products have differing characteristics or attributes.
- A considerable legislative improvement was made when the administrative services concerning fisheries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s the services have been transferred again to the MOF, it is necessary to actively follow the legislations concerning agriculture.

Unification of legislations concerning oceans and fisheries

- To help interoperate the policies concerning oceans, ports and fisherie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viability of their implementation by accelerating their interoperation by interlinking the relevant statutes that are divided into oceans, ports or fisheries based on the similarity of targets or areas regulated.


## III. Expected Effect

$\squa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policies for oceans and ports and those for fisheries.

It will also contribute maximization of value of seas by eliminating inefficiency and obstacles of services by enhancing the systematic link of the organizations and statutes.
2. Key Words : Oceans, fisherie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egislations concerning oceans, legislations concerning fisherie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9
제 1 절 연구의 의의 .....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 20
제 2 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21
제 1 절 조직의 변천 ..... 21

1. 해양수산관련 조직의 변천 ..... 21
2. 항만관련 조직의 변천 ..... 21
제 2 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 22
3.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 23
4. 해양수산부 폐지 정부조직법 ..... 24
5.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 25
제 3 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27
제 1 절 해양 - 항만 • 수산의 개념 ..... 27
6. 해양의 개념 ..... 27
7. 항만의 개념 ..... 39
8. 수산의 개념 ..... 40
제 2 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 44
9.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현황 ..... 44
10. 해양수산부 소관 기본법 ..... 70
11. 어촌개발 관련 법제 ..... 83
12.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 93
제 4 장 법제개선방안 ..... 133
13. 기본법의 정비 ..... 133
14.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 136
15. 해양과 수산 법제의 통합 ..... 139
참 고 문 헌 ..... 14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의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
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2013.3.23) 되어,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항만에 관한 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사무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가 되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가 된 이전의 국 토해양부 소관의 해양 - 항만 관련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수산 관련사무는 개별 법률에서 행정청을 일괄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개정을 통해 정리되었지만, 이러한 주무관청을 해양수산부 내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직법적 분리만으로는 정부조직법 개 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곤란하다.

해양•항만 및 수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 - 연안의 공간적 특성, 각 활동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차 원에서의 주무관청의 분리만으로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강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정 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양•항만•수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상호 참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해양•항만•수산정책은 해양•연안 등과 같은 공간 및 그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정책의 대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경합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 서는 정부조직의 개편 등으로 동일한 분야에 대해 각기 해양과 수산, 농림과 수산으로 구분되어 있었거나, 입법목적과 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던 법제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해양수산부는 해양, 항만, 수산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심판 이나 해운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해양수산 부의 신설 등에 따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법제연구는 이러한 사무에 관한 내용도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무부서의 변동이 많았던 해양, 항만, 수산에 관 한 법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의 대상으로 하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전체에 대해서는 제 3 장의 법제현황에서 소개하고 있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다루는 항만은 해운과 물류는 포괄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중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와 공동으로 소관되고 있는 법률이 많으며, 법제개선 방 안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의 소관 법률과의 비교연구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나, 보고서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4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 장에서는 해양•항만•수 산 관련 행정조직의 변화 및 조직법제의 개정을 다루었으며, 제 3 장에 서는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을 각 개념의 정리 및 정책에 관 한 내용을 위시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전체를 정리하면서, 기본 법, 어촌개발 관련 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에 관한 내 용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법 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제 2 장 해양 • 항만 • 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제 1 절 조직의 변천

1. 해양수산관련 조직의 변천

- 1948년 상공부 수산국
- 1961년 상공부 수산국 $\rightarrow$ 농림부 수산국
- 1966년 농림부 수산청
- 1973년 농수산부 수산청
- 1986년 농림수산부 수산청
- 1996년 해양수산부(농림부)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폐지)
- 2013년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 2. 항만관련 조직의 변천

- 1976년 건설부항만시설국 + 교통해운국 $=$ 항만청
- 1977년 해운항만청
- 1996년 해양수산부
- 2008년 국토교통부
- 2013년 해양수산부


## 제 2 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 법 률 | 정부조직법 <br> [법률 제5153호, 1996.8.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9.2.29., 전부개정] | 정부조직 법 [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전부개정] |
| :---: | :---: | :---: | :---: |
| 개정이유 | 해양선진대국 도약 <br> 위한 기반조성 | 작은 정부 구축 식품산업 진흥 |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구현 <br> (창조경제 추진을 위 한 신성장동력을 해 양영역으로 확장하 고 해양 - 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 |
| 해양수산부 <br> 소관업무 |  | 해양수산부 폐지 | 해양정책 |
|  | 수산 |  | 수산 |
|  |  |  | 어촌개발 및 수산 물 유통 |
|  | 해운, 항만 |  | 해운, 항만 |
|  | 해양환경보전 |  | 해양환경 |
|  | 해양조사 |  | 해양조사 |
|  | 해양자원개발 |  | 해양자원개발 |
|  | 해 양 과 학 기 술 연 구 - 개발 |  | 해 양 과 학 기 술 연 구 - 개발 |
|  | 해난심판 |  | 해양안전심판 |
| 해양경찰청 |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  |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

## 1.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 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 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 어 있는 수산•해운 • 항만 • 해양환경보전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1)하려는 이유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시행 1996.8.8.] [법률 제5153 호, 1996.8.8., 일부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에 신설되었다.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 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 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이 두어지게 되었다.
<신설에 따른 업무의 이관>2)

| 통합전 기구 | 이관 사무 |
| :---: | :--- |
| 수산청 | 수산진흥정책 수립, 수산자원 조성 등 <br> 수산관련 기능 |
| 해운항만청 | 해운, 항만건설 및 운영, 선원 - 선박 및 <br> 해상안전 관련 기능 |
| 과학기술처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능 |
| 통합후 |  |
| 해양수산부 |  |
| (해양경찰청) |  |

[^0]제 2 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통합전 기구 | 이관 사무 |
| :---: | :--- |
| 농림수산부 | 수산정책 및 수산통계 기능 |
| 통상산업부 | 심해저 광물 등 해양자원개발 기능 |
| 환경부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환경연구조사 기능 |
| 건설교통부 | 공유수면매립 • 관리，해양심판，해양조 <br> 사，수로 기능 |
| 경찰청 | 해양경찰 기능 |


| 통합후 |
| :--- |
|  |
|  |
|  |
|  |
|  |

## 2．해양수산부 폐지 정부조직 법

법률 제 88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부조직법」 제 26 조제 1 항에서는 대통령의 통할하에 두는 행정각부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를 규정하고， 제 44 조제 1 항에서 해양수산부의 관장사무로서 수산을 열거하였으나， 법률 제 8852 호로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제 22 조제 1 항제 9 호에 대통 령의 통할하에 두는 행정각부 중 하나로 농림수산식품부를 규정하고， 제31조제 1 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사무로서 수산을 열거하였다．

법률 제8852호로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의 어업수산정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림수 산식품부를 신설하고，산하에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식품산업을 전 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이었다．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으로 해양 수산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예를 들면，농업과는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어업인을 위한 수산 정책은 과거와 같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 으며4），해양전담부서의 일원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 해운물 류와 항만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될 경우 육상중심의 물류정책으로

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8．1．51면 참조．
4）국회 행정자치위원회，상게 검토보고서，52－53면．

인해 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며,5) 해양관련 기능의 통합이라는 외국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6)

## 3.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 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 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7)하려는 개정이유로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 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 교통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되었다.

[^1]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제 1 절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1．해양의 개념
（1）해양의 개념

해양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는「해양개발기본법」 제2조제 1 호에서 처 음 등장한 이후에，「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 수용되어 지 금에 이르고 있다．「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는＂해양＂이라 함은＂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 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 결 • 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 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해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1982년에 체결 된 UN 해양법협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국내법상 조치이 며，신해양질서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의 개념＞

| 해 양 | 내 수 <br> （Internal waters）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 <br> 에 있는 수역（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
| :---: | :--- | :--- |
|  |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br>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영해 및 접속수역법 <br> 제1조） |  |

8）국회 경제과학위원회，해양개발기본법안심사보고서，1987．10，8면 참조．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배타적 경제수역 <br> (Exclusive Economic <br> Zone) |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br> (Continental Shelf) <br> 으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br>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
| :--- | :--- | :--- |
|  |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 <br> 의 바깥끝 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 <br> 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br> 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9) |

(2) 해양관련 법제 및 정책

해양관련 법제는 해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 양정책 일반, 해양공간관리, 해양조사•연구, 해양과학 및 기술의 연 구, 교육, 해양자원의 개발 - 이용,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 및 방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관련 법제의 현황>

| 분 야 | 법 률 |
| :---: | :--- |
| 해양기본정책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 해양공간관리 | 영해 및 접속수역법 <br> ※ 외교부 |
|  | 배타적 경제수역법 <br> ※ 외교부 |

[^2]참조. 방문일 : 2014.10.31.

| 분 야 | 법 률 |
| :---: | :---: |
|  | 연안관리법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해양조사 - 연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br>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2738 호)에 따라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로 개정(2015.6.4.시행) <br> ※ 국토교통부 |
|  | 기상법 <br> ※ 기상청 |
| 해양과학 및 기술의 연구, 교육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  | 해양과학조사법 <br> ※ 영토관리와 관련되는 내용 포함 |
|  | 국립해양박물관법 |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br> ※ 남극환경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 연구 |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  | 국립학교설치령 ※ 대통령령 |
|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 대통령령 |
| 해양자원의 <br> 개발-이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 - 보존•전시 및 연구 |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br> ※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분 야 | 법 률 |
| :---: | :---: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 리 및 이용 도모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해양환경의 보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  | 해양환경관리법 <br> ※ 해양환경정책과 |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 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해양안전 및 방재 | 수난구호법 <br>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  | 수상레저안전법 <br>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
|  | 해사안전법 <br>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  | 해양경비법 <br> ※ 해양경찰청 경비과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위 표에서 정리한 법제 이외에도 관점에 따라서는 해양관광이나 해 양레저(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해양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정책을＂해양정 책＂이라 할 수 있다．해양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행정기관이 관 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관간 정책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해양’에 관한 관심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촉 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범을 바탕으 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주요국의 해양정책 개요

1）미 국
2009년 6월 12 일 대통령각서로 통합해양정책TF가 설립되었는데 10 ）， 이는 90 일 이내에 국가정책 및 정책조정의 방향에 대한 권고와 180 일 이내에 실효적인 연안•해양공간관리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CMSP）을 위한 방향에 대한 권고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통합해양정책TF는 2010년 7월 19일에 최종권고（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July 19，2010）${ }^{11)}$ 를 공표했 으며，오바마 대통령은 이 최종권고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 13547（Executive Order 13547）을 내렸다．

2013년 4월，국가해양회의（National Ocean Council）는 「국가해양정책 실시계획」（National Ocean Policy Implementation Plan）${ }^{12)}$ 을 발표했다．이 는 2009년 이래 오바마정권이 「국가해양정책」（National Ocean Policy）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해양거버넌스 정책의 구체 적인 실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이며，이 실시계획으로 새

[^3]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하거나 법적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기관이 창 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명령 13547(Executive Order 13547)과 통합해양정책 TF 의 최종권고와 연계되는 문서이다.13)

국가해양정책실시계획은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해양정책실시계획의 구성>

| 장 | 주요내용 |
| :---: | :---: |
| I . Introduction | O Organization of the Document |
| I. The Ocean Economy (해양경제) | Supporting Economic Growth(경제성장 지원) <br>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해도 작성능력 향상, 성과물 개선 <br> - 어업, 해운, 양식, 해상에너지 등의 상업적 시 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의 접근가능 성 향상 <br> - 해상통상 해사산업상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측시스템 유지•개발 <br> Promoting Jobs(일자리 창출) <br> - 허가절차 개선, 계획 - 인가절차에서의 조정기관 의 참가로 의사결정에서의 효율성 향상 <br> - 연안역의 습지•산호초 그 밖의 자연계를 보 호•회복함으로써 일자리 및 경제적 가치 창출 <br> - 환경열화에 따른 고용기회의 상실이나 경제적 손실 방지 <br> Developing a Skilled Ocean Workforce(숙련해양 노동력의 개발) <br> - 해양연구와 해양자원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인적 능력•숙련노동력 개발 |
| III. Safety and Security (안전과 안전보장) | Improving Maritime Domain Awareness(해양인식 의 향상) <br> - 해양인식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위한 원 격탐지시스템 향상 |

[^4]| 장 | 주요내용 |
| :---: | :---: |
|  | - 해양에서의 정책사항에 관한 정보•전문기술• 지식을 교환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 <br> Providing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n a Changing Arctic(변화하는 북극에서의 해사안전 과 안전보장 제공) <br> - 해난사고 및 환경영향에 대한 예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북극에서의 통신시스템 강화 <br> - 제기관의 협조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재해의 개 연성을 최소화하고,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북극에서의 환경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강화 <br> - 해양안전의 지원을 위해 북극에서의 해빙예측 강화 <br> - 항행안전 및 보다 정확한 위치측정을 위해, 북 극에서의 지도•해도의 작성 강화 <br> Enhanc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Ports and Waterways(항만과 수로의 안전과 안전보장의 강화) <br> - 수로관리 및 다른 항행상의 우선과제에 관한 결 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로의 조사 및 관리시스템 의 평가나 항만 접근 루트의 연구 <br> - 해수면상승, 이상기상 그 밖의 자연재해에 대한 항만의 취약점 평가, 리스크 및 영향의 보다 실 효적 저감조치 <br> - 항만과 수로에서의 수색구난활동 및 기름유출대 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양관측시스템 전개 |
| IV. Coastal and Ocean Resilience (연안역과 해양의 복원) | Reducing Adverse Conditions(악조건의 개선) <br> - 연안역의 습지상실 저감 <br> - 연안역 • 해양의 서식지 보호•보전•회복 <br> - 외래종의 발견 • 통제 • 예방 • 근절 <br> - 청결한 물을 공급하여 수도, 공동체, 생태계를 보다 건전화하기 위해 연안역•하구역의 수질 향상 • 보전 <br> Preparing for Change(변화에 대한 준비) <br> - 영향에 대해 조기경보•리스크평가•예측하는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장 | 주요내용 |
| :---: | :---: |
|  |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시 사이트의 조화적 네트워크 강화 • 통합 <br> - 생태계•경제•공동체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부 담요인의 영향 판단 <br> 연안역 공동체 및 해양환경의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에 대한 취약점 평가, 부족•연안역 공동 체•주와 파트너을 체결하여 그 취약점을 저감 하기 위한 적응전략 설계 • 실시 <br> Recovering and Sustaining Ocean Health (해양건전성의 회복 및 유지) <br> - 생태계 기반의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유된 목 표와 협동을 위한 기반 구축 <br> - 보다 나은 감시•조정•계획을 통해 연안역 • 하 구역의 회복 노력 향상 <br> - 보다 나은 예보, 통합적 감시, 준비강화를 통해 환경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개선 |
| V. Local Choices <br> (지역적 의사결정) | Providing Tools for Regional Action (지역적 활동을 위한 수단 제공) <br> - 해양 - 연안역의 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제휴를 위 해, 생태계 베이스의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파이 로트 계획을 확인•실시한다. <br> - 기후변동 - 해양산성화에 대한 공동체 - 해양환경 의 악화를 평가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결 정을 촉진하는 적응전략을 지원 - 실시한다. <br> - 지방•부족•주•지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도나 연안력의 지도를 포함한 연방의 비기밀정보 및 결정지원 수단의 개시•접근을 확대 - 개선한다. <br> Strengthening Regional Partnerships (지역파트너쉽의 강화) <br> - 지역적 우선과제를 지원하고, 지역의 중요사항에 대처하는 지역적 파트너쉽의 강화를 향상시킨다. - 이해를 가지는 부족의 권한 있는 기관의 참가를 지원하고, 부조그이 정보를 이용한다. |


| 장 | 주요내용 |
| :---: | :---: |
|  | Supporting Regional Priorities <br> (지역적 우선과제의 지원) <br> - 지역에서 결정된 경제•사회•환경•문화적인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게획을 지원한다. |
| VI. Science and Information (과학과 정보) | O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Ocean and Coastal Systems <br> (해양과 연안의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확장) <br> - 탐사•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을 향 상시킨다. <br> - 육지•해양•대기•빙하 • 생물 • 사회의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상호이용의 복잡성을 탐사하여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br> - 해양과 연안에 대한 교양을 향상시킨다. <br> Strengthening Our Ability to Acquire Marine Data and Provide Information <br> (해양정보 획득 및 정보제공의 능력강화) <br> - 장래의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통합적 관리 어프로치를 확보하기 위 해, 연방해양학선단의 현상을 평가한다. <br> - 다양한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 연안역• 오대호의 관측시스템의 인프라를 갱신•유지한다. <br> - 실시간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해 양 - 연안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br> - 북극의 변화를 관측하고, 그 사회경제•생태계 로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북 극에서 생물학적 관측을 실시한다. <br> Improving Science-based Products and Services for Informed Decision-Making <br>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초 를 가지는 제품 • 서비스의 향상) <br> -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구조를 개선한다. <br> -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생태계 베이스의 관 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질높은 정보•수단을 제공한다.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장 | 주요내용 |
| :--- | :--- |
|  | －연안육역의 보호• 회복에 괗나 우선과제를 인식 <br> 하기 위해，결정지원수단을 개발 $\cdot$ 공유한다． |
| VII．Conclusion |  |

（2）그 밖의 동향
미국은 북극정책에 대해 2013년 5월에 「국가북극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14), ~ 2014 ㄴ ㅕ ㄴ ~ 1 ㅇ ㅝ ㄹ ㅇ ㅔ ~ 「 ㄱ ㅜ ㄱ ㄱ ㅏ ㅂ ㅜ ㄱ ㄱ ㅡ ㄱ ㅈ ㅓ ㄴ ㄹ ㅑ ㄱ ㅅ ㅣ ㄹ ㅅ ㅣ ㄱ ㅖ ㅎ ㅚ ㄱ 」(I m p l e-~}$ 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15)}$ 을 발표 했다．두 문서의 기본방침으로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증진，북 극의 책임있는 관리추구，국제협력 강화이다．

오바마 정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가입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국가해양정책실시계획이나 국가북극전략 에서도 200 해리를 넘어선 해저자원개발이나 심해저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것 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EU 의 해양정책의 동향
EU 의 해양정책은 크게 공통어업정책과 「통합적 해양정책」（Integrated Maritime Policy ：IMP）으로 구성되고 있다．

EU위원회는 2010년 9월 8일에＂Marine Knowledge 2020＂을 발표했 다．이 코뮤니케이션16）은 현명하고 지속가능，그리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EU전략 수립을 배경으로 EU위원회가 EU각국에서 운용가능한

14）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nat＿arctic＿strategy．pdf 참조．
15）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implementation＿plan＿for＿the＿national＿ strategy＿for＿the＿arctic＿region＿－＿fi．．．．pdf 참조．
16） $\mathrm{http}: / /$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0DC0461\＆from＝EN 참조．

해양 정보구축을 위해，각종 정보의 원활하고 빈틈없는 제공을 확보 하기 위한 실시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2010년 12월 17일에 「EU에서의 해양공간계획－성과 및 장래의 전개」 （Maritime SPATIAL PLANNING IN THE EU－ACHIEVEMENTS AND FUTURE DEVELOPMENT）${ }^{17)}$ 가 발표되었다．

EU 의 해양공간계획（MSP）에 대해서는 통합적 해양정책（IMP ：Integrated Maritime Policy）에 있어서 IMP의 실시를 지원하는 통합적 수단의 하 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EU위원회는 2008년에 코뮤니케이션 「해양공 간에 대한 로드맵 ：EU에서의 공통원칙의 달성」（Roadmap for Maritime Spatial Planning ：Achieving Common Principles in the EU）${ }^{18)}$ 을 채택하 고， MSP 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원칙을 제안하였다．
EU 는 리스본조약19）에서 그 정책상의 권한을 다섯 분야로 분류하여 행사하게 되어 있다．즉，（1） EU 가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영역，（2） EU 가 가맹국과 권한을 공유하는 영역，（3）가맹국이 EU의 틀안에서 정책 을 조정하는 영역，（4）EU가 가맹국의 행동을 지원，조정，보완하는 영 역，（5）EU에 의한 입법권을 수반하지 않는 영역이다．20）
<리스본조약에서 규정되는 EU의 권한영역>21)

|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진 영역 | 관세동맹，경쟁정책，유로권의 금융정책，공 <br> 터업정책하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br> 통상정책 |
| :--- | :--- |

17） $\mathrm{http}: / /$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0DC0771\＆from＝EN 참조．
18）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08DC0791\＆qid＝14168 46970991\＆from＝EN 참조．
19）2007년 12월 13 일 서명，2009년 12월 1일 발효．
20）駐日欧州委員会代表部，「EUと加盟国の権限分担」，『ヨーロッパ』255号（2008年）， 26頁，참冬．海洋政策研究財団，総合的海洋政策の策定と推進に関する調查研究一各国 および国際社会の海洋政策の動向報告書，平成26年3月，17면 재인용．
21）전게 보고서 17 면 재인용．

| EU가 가맹국과 <br> 권한을 공유하 는 영역 | EU법이 우선하는 영역 | 역내시장，조약에서 인정된 사회정책，경 제•사회•영토의 결속，농업•어업（해양생 물자원의 보전을 제외），환경，소비자보호， 운수， EU 횡단망，에너지，자유•안전•공정 의 영역，공중위생문제에 있어서의 공통의 안전성 관심사항 |
| :---: | :---: | :---: |
|  | 가맹국도 독자의 <br> 정책을 <br> 채택할 <br> 수 있는 영역 | 연구•기술개발，우주，개발협력－인도지원 |
| 가맹국이 EU 의 틀안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영역 |  | 경제정책，고용정책，사회정책 |
| EU가 가맹국의 행동을 지원，조정， 보완하는 영역 |  | 건강의 보호와 향상，산업，문화，관광，교 육•직업훈련•청년•스포츠，방재，행정협 력 |
| 입법권을 수반하지 않는 EU 의 권한 영역（정부간 협력） |  |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 |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EU에서의 해양생물자원보호 및 어업정 책에 관해 두 가지의 중요한 입법조치가 취해졌다．즉，「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을 용인하는 국가에 대한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칙」22）및 「공통어업정책에 관한 규칙」23）이 그것이다．24）

22）2012년 9월 25일 채택，10월 25일 서명，11월 17일 발효．REGULATION（EU）No 1026／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measures for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on of fish stocks in relation to countries allowing non－sustainable fishing．
23）2013년 12월 10 일 채택， 12 월 11 일 서명， 12 월 29 일 발효．2014년 1월 1일부터 적 용．REGULATION（EU）No 1380／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on the Common Fisheries Policy，amending Council Regulations（EC）No 1954／2003 and（EC）No 1224／2009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EC）No 2371／2002 and（EC）No 639／2004 and Council Decision 2004／585／EC．
24）전게 보고서 17 면 참조．

## 2. 항만의 개념

## (1) 항만의 개념

항만의 법적 개념에 관해서는 항만법 제 2 조제 1 호에 정의되어 있다. 즉,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 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항만관련 법제 및 정책
<항만관련 법제의 현황>

| 분 야 | 법 률 |
| :---: | :---: |
| 항만기본정책 | 항만법 |
| 건 설 | 신항만건설촉진법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항만공사법 |
| 안전 및 질서유지 | 개항질서법 |
|  | 도선법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 산업법 | 항만운송사업법 |
|  | 해운법 |
|  |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 3．수산의 개념 <br> （1）수산의 개념 

수산에 관해 법률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로 부터 그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수산업에 관해「수산업법」제 2 조제 1 호에서＂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 물가공업을 말한다．＂고 하며，수산물에 관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제 3 조제 6 호나목은＂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한다．＂어업＂에 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법」의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3 조제 1 호나목은 어업을＂수산 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염전에서 바닷 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수산업법」 제 2 조제 2 호는 어업을＂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 식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을 생각하자면，＂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 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수산관련 법제의 현황과 수산정책
1908년 11월 12일에 최초의 수산관계법인 어업법이 제정되어，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5）그러나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게 되어 1911년 일본에 의해 어업령이 제정된 바 있으며，이후 일본은 1929년에 어업령을 폐지하고 조선어업령을 제정하였다．

25）전문 14 개조와 부칙 2 개조로 구성．

1948년 정부를 수립한 후 조선어업령에 따른 어업에 관한 면허 또 는 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의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26)이 운영되 다가 1953년에 현행 수산업의 기본법인 수산업법을 제정한 이후 수산 관계 법령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27)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 연 번 | 법 률 | 내 용 |
| :---: | :---: | :---: |
| 1 | 수산업법 | 부칙 제79조 <br> 조선어업령과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폐지 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 관한 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
| 2 |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br> [시행 1951.7.13.] [법률 제 <br> 209호, 1951.6.22., 일부개정] | 제 1 조 단기 4282년4월 15 일 기간만료된 어업 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어업법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 로 한다. <개정 1949.8.16., 1949.11.12.> 제2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 <br> 1. 트롤어업 <br> 2. 포경어업 <br> 3. 기선저예망어업(선체 50 톤이상, 기관 120마력이상) <br> 4. 기선건착망어업 <br> 5. 예망어업(권현망, 타뢰망, 항타뢰망을 제외함) <br> 6. 부망어업 <br> 7. 조망어업 <br> 8. 선망어업 <br> 9. 자망어업 |

26)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 1949.4.28.] [법률 제24호, 1949.4.28., 제정]
27) 수산업법의 연혁에 관해서는 최종화•차철표, 한국의 수산법제, 두남, 2010, 31-38면 참조.

| 연 번 | 법 률 | 내 용 |
| :---: | :---: | :---: |
|  |  | 10. 양식어업 <br> 11. 전용어업 <br> 전항각호 이외의 어업중면허어업에 있어서 는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 정으로 폐업하거나 면허를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그 설정되였든 어장에 한하여 면허 할 수 있으며 허가어업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폐 업(법령위반으로 허가를 취소당하였을 때 에는 제외한다)하였을때에는 당해허가건수 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br> [전문개정 1951.6.22.] <br> 제 3 조 전조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 은 각종어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시할 때 까지 그 어업근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 조업가능한 전수역에서 유동 성어업을 경영할수 있다. <br> [본조신설 1950.9.25.] <br> 제 4 조 전조에 의한 조업은 단기4283년6월 25 일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 사태의 계속중에 한한다. |
| 3 |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br> [시행 1950.9.25.] [법률 제 <br> 147호, 1950.9.25., 일부개정] | 제 1 조 단기 4282년4월15일 기간만료된 어업 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어업법 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br> 제 2 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단, 트롤어업, 포경어업, 기선 저예망어업(기관 120 마력이상), 기선건착망 어업, 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br> 제 3 조 전조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 은 각종어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시할 때 까지 그 어업근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 조업가능한 전수역에서 유동 성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 |


| 연 번 | 법 률 | 내 용 |
| :---: | :---: | :---: |
|  |  | 제 4 조 전조에 의한 조업은 단기4283년6월 25 일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 사태의 계속중에 한한다. |
| 4 |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br> [시행 1950.5.8.] [법률 제 <br> 144호, 1950.5.8., 일부개정] | 제 1 조 단기 4282년4월 15 일 기간만료된 어업 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어업법 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br> 제 2 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단, 트롤어업, 포경어업, 기선 저예망어업(기관 120 마력이상), 기선건착망 어업, 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
| 5 |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br> [시행 1949.11.12.] [법률 제 <br> 64호, 1949.11.12., 일부개정] | 제 1 조 단기 4282년4월 15 일 기간만료된 어업 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어업법 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br> 제 2 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
| 6 |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br> [시행 1949.8.16.] [법률 제 <br> 50호, 1949.8.16., 일부개정] | 제 1 조 단기 4282년4월15일 기간만료된 어업 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단기 4282년 10 월 31 일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 는 예외로 한다. <br> 제 2 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
| 7 |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br> [시행 1949.4.28.] [법률 제 <br> 24호, 1949.4.28., 제정] | 제 1 조 단기 4282년4월 15 일 기간만료된 어업 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단기 4282년7월31일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br> 제 2 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

제2절에서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 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 해양과 항만에 관련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 모

두가 위에서 정리한 수산에 관한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하기 곤란한다. 말하자면, 현행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는 수산개념으로 포 섭되지 못하는 수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산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산개념이 이를 포괄할 정도의 개 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산정책은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산업을 규제 및 지원하는 행정활동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2 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항

## 1.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현황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제정•공포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은 91개 법률, 95 개 시행령, 102 개 시행규칙으로 총 288 개이며, 그 중 국토교 통부(11개), 농림축산식품부(64개), 환경부(6개), 법무부(2개), 안전행정 부(1개)와 공동소관하고 있는 법령은 총 84개이다. 28 )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현황 2014.10.31. 현재>

|  | 공동소관법률 |  |  |  |  | 단독소관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 <br> 교통부 | 농림축산 <br> 식품부 <br> (식품의약 <br> 품안전처) | 환경부 <br> (+외교부) | 법무부 | 안전 <br> 행정부 | 합 <br> 계 | 해양 <br> 수산부 | 총 <br> 계 |
| 법 률 | 3 | 21 | 2 | 2 | - | 28 | 63 | 91 |
| 시행령 | 4 | 22 | 2 | - | 1 | 29 | 66 | 95 |

28) 법령의 공동소관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의 정보에 기초하여 10 월 31 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 공동소관법률 |  |  |  |  | 단독소관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 <br> 교통부 림축산 <br> 식품부 <br> (+식품의약 <br> 품안전처) | 환 경부 <br> (+외교부) | 법무부 | 안 전 <br> 행 정 부 | 합 <br> 계 | 해양 <br> 수산부 | 총 <br> 계 |  |
| 시 행 <br> 규 칙 | 4 | 21 | 2 | - | - | 27 | 75 | 102 |
| 합 계 | 11 | 64 | 6 | 2 | 1 | 84 | 204 | 288 |

(1)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 법령 : 11 개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 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br> [시행 2014.2.7.] [해양수 산부령 제70호, 2014.2.7., 일부개정] |
| 1 | 물류정책기본법 <br>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 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3.10.2.] [국토교 통부령 제31호, 2013.10.2., 일부개정] <br> [시행 2013.10.2.] [산업통 상자원부령 제 28 호, 2013. 10.2., 일부개정] <br> [시행 2013.10.2.] [해양수 산부령 제41호, 2013.10.2., 일부개정] <br> ※ 물류정책기본법 제38 조부터 제42조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2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 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3.27.] [국토교 통부령 제3호, 2013.3.27., 제정] <br> [시행 2013.3.27.] [해양 수산부령 제 22 호, 2013. 3.27., 제정] |
| 3 | - | 사회간 접자 본건 설추진 위원회규정 <br>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
| 4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당법 <br>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 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선박법, 어선법, 수 상레저안전법 관련 선 박의 저당권 설정에 관 한 법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당법 시행령 <br>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 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 |
| 5 |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4.1.18.] [국토 교통부령 제65호, 2014. 1.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만 존재 |
| 합 계 | 3 | 4 | 4 |

(2)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 법령 : 64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3 개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하는 법령은 법률 21개, 시행령 22개, 시 행규칙 21 개로 총 64 개이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종전의 농림수산식품 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어업, 산업의 주체인 농민과 어민, 산업이 영위되 는 공간인 농촌과 어촌, 산업의 산물인 농산물과 수산물에 관한 공통 사항에 관해서는 이러한 입법형식과 내용도 일응 이해될 수 있다. 다 만, 산업, 산업의 주체, 산업이 영위되는 공간, 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을 경우에는 점차 법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및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고, 따라서 해양수산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 | 농림 수산 식품 과학 <br> 기술 육성법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림수산식 품 과학 기 술 육성법 시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성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5.2.]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89호, 2014.5.2., 일부개정] <br> [시행 2014.5.2.] [해양수산 부령 제80호, 2014.5.2., 일 부개정] |
| 2 | 농 림 수 산 식 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 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 림 수산 식 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시행 2014.5.26.]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91호, 2014. 5.26., 일부개정] <br> [시행 2014.5.26.] [해양수 산부령 제82호, 2014.5.26., 일부개정]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4.5.30.]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59호, 2013. 11.29., 일부개정] <br> [시행 2014.5.30.] [해양수산 부령 제55호, 2013.11.29., 일부개정] |
| 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7호, 2013. 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7호, 2013.3.24, 일부개정] |
| 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의약품안전처, 해 양수산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 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행규칙 <b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4.2.14.] [해양수 산부령 제73호, 2014.2.13., 일부개정] <br> [시행 2014.2.1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77호, 2014. 2.13., 일부개정] |
| 6 | 농수 산 생 명자 원 의 보존•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br>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8호, 2013. 3.24., 일부개정] |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  |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8호, 2013.3.24., 일부개정] |
| 7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4.16]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27호, 2013. 4.16, 제정] <br> [시행 2013.4.16] [해양수 산부령 제 25 호, 2013.4.16, 제정] |
| 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br> 제9호, 2013.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9호, 2013.3.24, 일부개정] |
|  |  |  |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9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 10 호, 2013. 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 10 호, 2013.3.24., 일부개정]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 <br>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 11 호, 2013. 3.24., 일부개정]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1호, 2013.3.24, 일부개정] |
| 11 |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br> ※ 농어업재해보험 법의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는 재해보험팀 으로 농어업재해대 책법을 소관하고 있 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소득복지 과로 농업재해대책 과는 구분되어 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4.6.26.]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93호, 2014. 6.26., 일부개정] <br> [시행 2014.6.26.] [해양수 산부령 제86호, 2014.6.26., 일부개정] |
| 12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 |
| 13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 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 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 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9.4.]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102호, 2014.9.4., 제정] <br> [시행 2014.9.4.] [해양수산 부령 제92호, 2014.9.4., 제정] |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4 | 농어촌정비법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농림축산 <br> 식품부령 제13호, 2013.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3호, 2013.3.24, 일부개정] |
| 15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14호, 2013. 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4호, 2013.3.24., 일부개정] |
|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10.18.]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46호, 2013. 10.18., 제정] <br> [시행 2013.10.18.] [해양수 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
| 16 | 해양수산부, 농림축 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 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10.18.]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48호, 2013.10.18., 전부개정] <br> [시행 2013.10.18.] [해양수 산부령 제44호, 2013.10.18., 전부개정]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  |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6조, 제 125조 |
|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10.18.]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47호, 2013. 10.18., 일부개정] <br> [시행 2013.10.18.] [해양수 산부령 제43호, 2013.10.18., 일부개정] |
| 17 |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 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20호, 2013.3.24., 제정] <br>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 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 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
| 18 | ※ 약사법 제 85 조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 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 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12.31.]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69호, 2013. 12.31., 일부개정] <br> [시행 2013.12.31.] [해양수 산부령 제64호, 2013.12.31., 일부개정] <br> ※ 약사법, 의료기기법 |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9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 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 행규칙 <br> [시행 2013.3.24.]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 18 호, 2013.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 16 호, 2013.3.24., 일부개정] |
| 20 |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19호, 2013.3.24., 일부개정]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7호, 2013.3.24., 일부개정] |
| 21 | 종자산업 법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종자산업법 시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10.18.]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49호, 2013.10.18., 전부개정] <br> [시행 2013.10.18.] [해양수 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
| 2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br> -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4.1.1.] [해양수산부 <br> 령 제32호, 2013.7.3., 제정] <br>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br>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left\lvert\, \(\left.\begin{array}{l}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br>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 <br>
품부령 제35호, 2013.6.12., <br>
전부개정] <br>
※ 소관법률 4개 : 비상자 <br>
원대비, 친환경농어업, 식 <br>
품산업진흥법, 비영리법인\end{array}\right.\right\}\)
(3) 환경부와 공동소관 법령 : 6 개(환경부+외교부 3 개 포함)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 | 남극활동 및 환경보 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 경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시행 2013.3.23.] [외교부 령 제1호, 2013.3.23., 타법 개정] |
| 2 | 습지보전 법 <br> 환경부, 해양수산부 | 습지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해양수산부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해양수산부 [시행 2013.3.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 개정] <br> ※ 습지보전법에서는 공 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지 만, 공동부령의 형식을 취 하고 있지 않음 |
| 합 계 | 2 개 | 2 개 | 2 개 |

(4) 법무부와 공동소관 법령 : 2개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 | 선박등기법 <br> 법무부, 해양수산부 <br> ※ 선박법 제8조제4 <br> 항에 따른 선박등기 <br> 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  |
| 2 | 선박 및 해상구조물 <br> 에 대한 위해행위의 <br> 처벌 등에 관한 법률 <br> 법무부, 해양수산부 | - | - |
| 합 계 |  |  |  |$\quad$| 2개 |
| :--- |

(5) 안전행정부와 공동소관 법령 : 1 개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br> 기관 직제 <br>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 <br> 관 직제 시행규칙 <br> [시행 2014.6.33.] [해앙수 <br> 산부령 제85호, 2014.6.30., <br> 일부개정] |
| 합 계 | - | 1 개 |  |

(6) 해양수산부 단독 소관 법령 : 204개

법률 63개, 시행령 66개, 시행규칙 75개 총 204개 법령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 | 개항질서법 <br> 해양수산부 | 개항질서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
| 2 |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시행 2014.1.1.] [해양수산 <br> 부령 제63호, 2013.12.30., 타법개정] |
| 3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14.] [해양수 산부령 제74호, 2014.2.14., 제정] |
| 4 | - | -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시행 2012.11.1] [농림수산 식품부령 제316호 2012.11.1, 일부개정] |
| 5 | ※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 법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3.] [대통령 령 제24490호, 2013.3.23., 제정] | - |
| 6 |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 2015.4.16.] [법률 제12818호, 2014.10.15., 제정] 해양수산부 | - | - |
| 7 | 국 립해양 생 물자원관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시행 2015.4.16.] [법률 제12819호, 2014.10.15., 제정] 해양수산부 |  |  |
| 8 |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4.6.23.] [해양수 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 |
| 9 | 국제항해선박 및 항 만시설의 보안에 관 한 법률 해양수산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해양수산부 <br> 해양수산부령 |
| 1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 행규칙 <br>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9.10.] [농림 수산식품부령 제309호, 2012.10.5., 제정] |
| 11 | 내수면어업 법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6.23.] [해양수 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 |
| 12 | 도선 법 해양수산부 |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도선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6.23.] [해양수 <br> 산부령 제83호, 2014.6.23., 일부개정] |
| 13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14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br> 해양수산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br> 해양수산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6.23.] [해양수 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 |
| 15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해양수산부령 |
| 1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br>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br>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br>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4.] [해양수 <br> 산부령 제1호, 2013.3.24., <br> 타법개정] <br>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br> 의 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 <br> 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br> 관한 규칙 <br> [시행 1997.8.7] [법무부령 <br> 제450호, 1997.8.7., 제정] |
| 17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 행령 <br> 해양수산부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br>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4.] [해양수 <br>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18 | 선박법 <br> 해양수산부 |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해양수산부령 |


|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left.| \begin{array}{l}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br>

해양수산부 <br>

해양수산부령\end{array}\right]\)|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 :---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령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  | 부령 제106호, 2014.10.28., 일부개정] |
| 23 | 선원법 해양수산부 |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선원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4.9.] [해양수 <br> 산부령 제65호, 2014.1.8., 일부개정] |
|  |  | 선원근로감독관규정 <br>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br> 044-200-5555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555 |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 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24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25 |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해양수산부령 |
| 26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 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 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27 | 수산생물질병 관리 법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 행령 <br>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 행규칙 |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  | [시행 2013.12.26.] [해양수 산부령 제59호, 2013.12.26., 일부개정] |
| 28 |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 조업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 <br> [시행 2014.6.23.] [해양수 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 |
|  |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4.6.23.] [해양수 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 |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 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4.30.] [해양수 산부령 제81호, 2014.4.30., 일부개정] <br>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 리법, 어장관리법 위임 |
|  |  |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 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  |  |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1.10.26] [농림수 산식품부령 제214호, 2011. 10.24 , 제정] <br> ※ 농림수산식품부령 |
|  |  |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 한 규칙 <br> [시행 2014.1.1.] [해양수산 <br> 부령 제63호, 2013.12.30., 타법개정] |
|  |  | 어업등록령 <br> 해양수산부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4.1.1.] [해양수산 <br> 부령 제63호, 2013.12.30., 타법개정] |
|  |  |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br> ※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 12 조 제4항, 원양산업발전법 제 16 조제 1 항 |
| 29 |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규칙 <br> [시행 2014.2.14.] [해양수 산부령 제72호, 2014.2.13., 일부개정] |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30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 - |
| 31 |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32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 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5.4.16.] [법률 제12825호, 2014.10.15., 제정] 해양수산부 | - | - |
| 33 |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규칙 <br> [시행 2014.6.23.] [해양수 <br> 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 |
| 34 | 어선법 해양수산부 |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어선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1.1.] [해양수산 <br> 부령 제63호, 2013.12.30., 타법개정] |
| 35 | 어선원 및 어선 재 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36 |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 | - |
| 37 |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4.6.23.] [해양수 <br> 산부령 제84호, 2014.6.23., <br> 타법개정] |

제 3 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38 | 어촌•어항법 <br>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어촌 - 어항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br>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39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 법 시행령 <br> 해양수산부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 법 시행규칙 <br> [시행 2013.6.12.] [해양수 산부령 제28호, 2013.6.12., 제정] |
| 40 | 여수세계박람회 기 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 |
| 41 |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해양수산부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br> 해양수산부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br>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4.] [해양수 <br> 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
| 42 |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해양수산부령 |
| 43 | 염업조합법 <br> 해양수산부 | 염업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 |
| 44 | ※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r>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br>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left.|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right\left.] \begin{array}{l}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3.3.24.] [해양수 <br>
산부령 제1호, 2013.3.24., <br>
타법개정]\end{array}\right]\)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left.|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right]$| 항로표지법 |
| :--- |
| 해양수산부 |
| 52 |


\left.|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right]$| 해사안전법 |
| :--- |
| 해양수산부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62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 행령 <br> 해양수산부 | - |
| 63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안전행정부)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10.23.] [해양수 산부령 제47호, 2013.10.23., 제정] |
| 64 | ※ 식품산업진흥법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 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3.3.24.] [해양수 산부령 제20호, 2013.3.24., 제정] <br>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31., 타법개정] |
| 65 | ※ 친환경농어업 육 <br> 성 및 유기식품 등 <br> 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br> [시행 2014.1.1.] [해양수 산부령 제32호, 2013.7.3., 제정] <br>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 |


| 연번 | $\begin{array}{l}\text { 법 률 }\end{array}$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산식품부령 제35호, 2013. |
| :--- |
| 6.12., 전부개정] |
| ※소관법률 4개 : 비상 |
| 자원대비, 친환경농어업, |
| 식품산업진흥법, 비영리 |
| 법인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번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 :--- |
| [시행 2014.1.1.] [해양수산 |
| 70 |

2. 해양수산부 소관 기본법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1) 제안이유

2001년 11월 26일 정부제출법률안으로 제안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안」은 그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해양의 합리적인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해양수산정책을 종합적•체계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해양선 진국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아비지하려 는 것임．＂

2）입법의 연혁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1987년 제정된 「해양개발기본법」29）을 폐지 하고 새로운 해양수산분야의 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되 었으며 30 ）， 6 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폐지하면서 승계한 「해양개발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6차에 걸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해양개발기본법
가．제안이유
해양개발기본법안에서 제시된 제안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첫 째는 자원의 보고로서 해양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둘째로는 국제적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 등으로 해양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을 둘러싼 국 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셋째로는 다수의 정부부처가 수 행하고 있는 해양개발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다른 법과의 관계 에서 모법의 성격을 가진 종합계획적 성격을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1)}$

29）해양개발기본법［시행 1988．6．5，법률 제3983호，1987．12．4．，제정］
30）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 2002．11．14，법률 제6700호，2002．5．13，제정］
31）해양개발기본법안 중 제안이유 참조．

## 나. 법적 성격

해양개발기본법은 그 법률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 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선언적이며 프로그램적 규 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 }^{32)}$

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크게 해양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기술개발, 해양생물 - 광물자원 - 에너지의 개발 및 해양공간 자원의 이용,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 해양기술도시의 건설, 위원회 의 설치 등이다.
(2) 개정의 주요내용

| 연 번 | 개정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 :--- | :--- | :--- | :---: |
| 7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br> 일부개정 법률[시행 <br> 2014.3.18.] [법률 제 <br>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 <br> 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 <br> 한 사항을 추가 |  |  |
| 언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br>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 <br> 일부개정] 2014.3.18., <br> 관은 연수 • 교육기관의 장과 <b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br> 연수 교육 정원의 증원 또는 | ○ 해양수산부 |  |  |

32)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해양개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87.10. 6면 참조. 동 심사 보고서에서는 해양개발기본법이 "종합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 제 3 조의 "해양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이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충분 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본계획과 해양개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해양개발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은 해양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부정책의 국무총리에 의한 조정을 도모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해양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자하는 입법자 의 의사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연 번 | 개정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 :---: | :---: | :---: | :---: |
|  |  |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 |  |
| 6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 11596호, 2012.12.18., 일부개정] |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 O 해양수산부 |
| 5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br> [시행 2013.3.23.] [법률 제11709호, 2013.3.23., 일부개정]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 해양수산부( $\leftarrow$ 국토해양부, 농림 수산식품부) |
| 4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전부개 정법률 <br> [시행 2009.11.28.] <br> [법률 제9717호, 2009. <br> 5.27., 일부개정] | ○ 제 25 조부터 제 27 조까지를 각 각 삭제 <br> ※ 제 25 조 (수산업의 육성 등), 제 26 조 (수산기술개발 촉진), 제 27조 (어촌 정주환경의 개선 등) | $\bigcirc$ 국토해양부 <br> ○ 농림수산식품부 <br> ○ 국토해양부와 <br> 농림수산식품부 |
| 3 | 해 양수산 발 전기 본 법 일부개정법률[시 행 2009.8.7.] [법률 제9454호, 2009.2.6., 일부개정] |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변경 <br> $\bigcirc$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양환 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서 수행 | $\bigcirc$ 국토해양부 <br> ○ 농림수산식품부 <br> ○ 국토해양부와 <br> 농림수산식품부 |
| 2 | 정부조직법 전부개 정 법률 <br> [시행 2008.8.29, 법률 제8852호, 2008.2.29] | ○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 31조) <br> ※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 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 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 $\bigcirc$ 국토해양부 <br> ○ 농림수산식품부 <br> (도시 - 어촌교류, 어 촌 특 화 관 광: <br> 제 28 조제 3 항, 후 계수산인과 전문 수산인의 육성: 제 31 조제 3 항)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개정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br> ※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 <br> 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 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 - 국토해양부와 농 림수산식품부(선 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제31조 제2항) |
| 1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br> [시행 2002.11.14.] <br> [법률 제6700호, 2002. <br> 5.13., 제정] | ○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과 해양산업 육성 | O 해양수산부 |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중 수산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그 제명만을 보자면, 해양수산정책의 기본 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개별 법률의 제정방향이나 해 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여 하에 따라 수산관련 기본법의 제정 내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 수산관련 규정

먼저, 수산관련 내용은 제6조제 2 항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 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제5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5의2호)이 있다. 기본계획은 입법 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계 획수립과정에서의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 해 정책의 평가와 환류가 가능해지도록 기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수 산관련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제 7 조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해양개발 등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세 번째로，제 22 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는＇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수산물교류’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로，제 31 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의견제시（제 2 항），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제 3 항），후계수산인과 전문수산인의 육성（제 4 항）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2）「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수산관련 기본법으로서의 한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법률의 제명에 ‘수산’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고는 있지만，그 입법 연혁적으로는 「해양개발기본법」의 내용에 해 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고，입법목적에 서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에 중점이 있으며，‘수산＇이＇해양＇가 부가되어 관용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수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내용은 상 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제정이유
2009년 4월에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법 률안（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 에 따라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

제 3 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을 폐지하여 통합하는 한편，「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수산업법」 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 관련 규정을 이 법의 농업•농촌 관련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며，어선감척사업으로 실직하는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 록 하려는 것임．＂

2）입법연혁
제정이유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로서「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수산업법」의 관련 규 정을 통합한 법률이다．

| 연 번 | 개정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 :---: | :---: | :---: | :---: |
| 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br> ［법률 제9717호， 2009. <br> 5．27．，전부개정］ | 법률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명 및 제3조） <br> ○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 진흥 등（법 제 20 조 및 제 35 조） <br> ○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과 보전（법 제 30 조부터 제 32 조까지） <br>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경영안정 과 구조개선 및 실질 농어업인의 재 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법 제39조 및 제41조） | 농림수산 <br> 식품부 |
| 2 | 농업 • 농촌 및 식품 <br> 산업 기본법（약칭： <br> 농어업식품기본법） <br> ［시행 2008．6．22．］ |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 1 조） <br>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 제 8 호•제 9 호，제 4 조제 4 항，제 7 조，제 21조•제22조 및 제51조） | $\bigcirc$ 농림부 |


| 연 번 | 개정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 :---: | :---: | :---: | :---: |
|  | [법률 제8749호, 2007.12.21., 전부개정] |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 조, 제 10 조 및 제 50 조부터 제 52 조까지) <br> $\bigcirc$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 제 9 호, 제 9 조 및 제 45 조부터 제 48 조까지) <br>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br>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법 제27조제 2항) <br> $\bigcirc$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 책과 국제협력(법 제 12 조•제 13 조 및 제56조부터 제 58 조까지) <br> ○ 농업기술 - 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 권 등의 보호(법 제36조 및 제38조) <br> ○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법 제40조제3항) <br>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1조) |  |
| 1 | 농업•농촌기본법 <br> [시행 2000.1.1.] [법 <br> 률 제5758호, 1999. <br> 2.5.,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 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 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 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법 제4조). $\bigcir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 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 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법 제11조 내지 제16조). $\bigcir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 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 | $\bigcirc$ 농림부 |

제 3 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개정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 :---: | :---: | :---: | :---: |
|  |  | 록 하고，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 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 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 업과학기술의 진흥，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 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9조）． <br>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 조정，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 선，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및 제31조）． <br> ○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 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 35 조）． <br> ○ 농업기본법，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 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법 부칙 제2조）． |  |

3）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해양관련 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 정법률에 따라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의 제 25 조부터 제 27 조까지를 수용하면서 부칙 제 6 조제 17 항에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제 25 조부터 제 27 조까지를 삭제하 였다．다만，아래 표의 비고란에서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삭제된

조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 보다는 이미 2007년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시에 농업•농촌 관련 규정에 반영되어 있었던 조문에＇어업과 어촌＇，＇수산물＇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농 어업과 농어촌＇，＇농수산물＇과 같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용어의 변환 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이는 분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관된 조문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관련 조문의 이관 대조표＞33）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개정안에 반영된 조문 | 비 고 |
| :---: | :---: | :---: |
| 제 25 조（수산업의 육성 등） 정부는 지속적인 수산물 의 생산기반 유지•확충 과 생태적 조건에 적합 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산 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 8 조（농어업의 구조개선 과 지속가능한 발전）（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농어 업 경영，농지의 소유 및 이용，어장의 이용 및 보전，수산자원의 이 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 를 개선하고，식품산업 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 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 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r>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 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 수산업의 육성 및 지 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이며，농업부문은 현행 기본법에 이미 있는 내용임． <br> －200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시 이미 반영함． |

3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정부제출），2009．4， 28 면＜참조 $2>$ 의 내용을 삭제하여 정리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개정안에 반영된 조문 | 비 고 |
| :--- | :--- | :--- |
|  |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 |  |
| 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 |  |  |
| 을 육성하여야 한다. |  |  |
| 제34조(농어업 생산기반의 |  |  |
| 정비) 1ㅜㄱ가와 지방자 |  |  |
| 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  |  |
| 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 |  |  |
| 어업 생산력이 안정적으 |  |  |
| 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 |  |  |
| 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  |  |
|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 |  |  |
| 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  |  |
| 행하여야 한다. |  |  |
| 라옹림수산식품부장관 |  |  |
| 은 농어촌 용수구역단 |  |  |
| 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  |  |
|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  |  |
|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  |  |
|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 |  |  |
| 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 |  |  |
| 영하여야 한다. |  |  |
| 제39조(친환경농어업 등의 |  |  |
|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 |  |  |
| 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 |  |  |
| 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 |  |  |
| 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 |  |  |
| 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  |  |
|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 |  |  |
| 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  |  |
|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 |  |  |
| 산기술 생산방법 및 어 |  |  |
| 법 어구 양식기술의 |  |  |
|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  |  |
|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개정안에 반영된 조문 | 비 고 |
| :---: | :---: | :---: |
|  |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제26조(수산기술개발 촉진) (1) 정부는 첨단수산기술 의 연구, 실용수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 여 수산관련 연구•지도 기관•대학 및 단체등 (이하 "수산관련기관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기술의 연구•개발 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산관련 기관등에게 수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36조(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 등의 진흥) (1)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 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 여 농어업 생산기술, 농 어업 생산기반 정비기 술, 생산농수산물 관리 기술, 농어업 경영기법, 농어업 안전작업기술, 농 수산물 유통기술, 농수산 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 - 개발 - 보급과 농어업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 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br> (2) 제 1 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br> 제37조(농어업 관련 산업 의 기술개발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관련 산업의 기 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 - 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 | 수산기술개발 및 연 구 촉진에 관한 사항 이며, 농업부문은 현 행 기본법에 이미 있 는 내용임. <br> - 200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시 이미 반영함.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개정안에 반영된 조문 | 비 고 |
| :---: | :--- | :--- |
|  | 에 농어업 관련 산업의 <br>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 <br> 게 할 수 있다. <br>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br> 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br>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 |  |
|  | 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 <br> 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  |
|  |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br> 지원할 수 있다.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개정안에 반영된 조문 | 비 고 |
| :---: | :---: | :---: |
|  | 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br>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제 1 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 촌의 공익기능과 농어업 생산여건, 농어촌 생활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0 조(지역 간의 소득 균 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 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 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3. 어촌개발 관련 법제

(1) 어촌개발에 관한 헌법의 연혁

어촌개발에 관한 규정은 제정헌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 또는 ‘유신헌법’(헌법 제8호, 1972.12.27) 제11장 제 120 조제 1 항에 신설되었으며, 그 후 헌법 제 9 호, 제 10 호를 거치면서 관 련 조문내용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내용은 수정됨이 없이 지 금에 이르고 있다.

헌법 제8호, 1972.12.27.
제 11 장 경제
제 120 조 (1) 국가는 농민 -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 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2) 농민 -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헌법 제9호, 1980.10.27.
제9장 경제
제 124 조 (1) 국가는 농민 -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 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2)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헌법 제 10 호, 1987.10.29.,
제9장 경제
제 123 조 (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 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 를 진다.
(3)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 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 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다만, 헌법 제 8 호와 제 9 호는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어촌개 발’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 호는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 여 어촌종합개발과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촌개발을 보는 관점이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8호와 제9호는 어촌개발을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 로 상정하고 있으나，헌법 제 10 호는 어촌개발을 어업의 보호•육성이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어촌개발에 관한 기본법

해양수산부 소관 기본법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존재한다．아래에서는 두 기본법에서 어촌개발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기준 내지 해석기준을 제시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먼저，「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 조의 이 법의 목적 을＂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 2 조제 3 호 어촌에 관한 기본이념을＇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 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 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등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생산 자단체，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제47 조의 2 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어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50 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어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지역개발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어촌지역 개발에 관하여 '법의 목적, 법의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임, 기후변화, 농어촌 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적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2) 어촌의 공익적 기능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면서, "어 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생산자단체로 하여 금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5 항은 소비자는 "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6조는 정책수립•시행의 기본원칙을 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로 하여금 '어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도 록 하며,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 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 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인 제13조는 제3항에서 정부로 하여금 "주요 통산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어촌의 공익기능이 약 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56조는 "정부는 $\cdots$ (중략) $\cdots$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촌의 공익기능이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1）식량의 안정적 공급，（2）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3）수자 원의 형성과 함양，（4）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5）생태계，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6）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과 같은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제 3 장 제 6 절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절로서 제 44 조부터 제 47 조의 2 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에 관한 제 48 조는 제 2 항에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농어촌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어촌지역 개발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정책수립 • 시행의 기본원칙，어촌의 공 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통상 및 국제 협력，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한경 및 경관보전，전통 농경•어로 문화의 계승，공익기능 증진하기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지구 온난화 방지，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과 같은 분야에서＇공익적 기능＇내지＇공익기능＇을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2）해양수산발전 기본법
（1）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어촌특화관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는 해양관광진흥을 위하여 어촌특화 관광을 위한 시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 다．여기서 어촌특화관광은＂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법 제 28 조제 4 항은＂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 가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제4항은＂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 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 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이 조항은 전문인력 육성이 어촌개발의 핵심 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어촌의 법적 개념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산지면적이 국토 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서，도 서와 같은 조건불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촌에서는 반농반어（半農半漁）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어촌에 관한 법제는 어촌의 독자성을 고려하기 보다는＇농어촌＇，＇농 어업과 같은 용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항시 농촌 법제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법제상 농촌이나 산촌의 개념과 구분될 수 있는 어촌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용도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의 농어촌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의 개념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도시 개념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용도지 역34）중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을＇농어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5 호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읍•면의 지역에 해당하거나 읍•면이 아닌 지역

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중 그 지역의 농어업，농어업 관련 산업，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 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지역＂을 말한다．${ }^{35)}$
‘읍•면’은 군에 두는 행정구역36）이며，＂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 만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또는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 개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37)}$ 보다 상세한 읍의 설치 기준을 보면，읍은＂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 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해당 지역 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8)}$

농어촌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 한 특별법」 제2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 2 조제 1 호나 목은＂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정하고 있다．＇동＇은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 다）에 두는 행정구역으로서，39）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동’을 둘 수 있으며，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동＇을 둘 수 있 다．${ }^{40)}$ 즉，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만 을＇농어촌＇으로 보고 있다．

[^5]2）어촌의 개념
‘어촌’에 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 2 조제 1 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 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는 어촌의 개념은 첫째，＂하천•호수 또 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 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둘째，＂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 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 는＂동의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지역41）중에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녹지지역이라 할 수 있다．

## 3）농촌의 개념

‘농촌’의 개념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 호에 정의되어 있다．${ }^{42 \text { ）즉＂농촌＂이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 }}$ 업 기본법」 제 3 조제 5 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이다．이는 농어촌에서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농촌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농촌의 개념을 농어촌에서 어촌을 공제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다만，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 하는 ‘어촌＇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후 남게 되는＇농촌＇의 개념도 불명확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상 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42）농촌의 개념에 관해 「농촌진흥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법의 정 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4) 산촌의 개념
‘산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산림기본법」 제 3 조제 2 호, 동 시행령 제2조에 있다. 즉,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 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퍼센트 이상이며,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이며, 행정구 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 면을 말한다.
(4) 어촌개발 법제

위에서 어촌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적으로 어촌개 념은 농•어촌개념으로 혼합되어 사용되거나, 농촌개념에 부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촌개발에 관한 법제는 직접적으로 어촌개발을 주요 한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과 그 밖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률들과 조성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촌개발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연 번 | 법 률 명 |
| :---: | :--- |
| 1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 3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4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 5 | 농어촌도로 정비법 |
| 6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7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8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명 |
| :---: | :--- |
| 9 | 농어촌정비법 |
| 10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11 | 농어촌특별세법 |
| 12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13 | 어촌•어항법 |
| 14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 15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17 | 연안관리법 |
| 18 | 동•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19 | 도서개발촉진법 |
| 2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연 번 | 법 률 명 | 관련 규정 및 내용 |
| :---: | :---: | :---: |
| 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 5 개년계획(농산어촌 등 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제4조)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 추진(제16조) |
| 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제 5 조제 9 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 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 3 | 수도 법 |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제 5 조제 2항제7호) : 농어촌생활용수의 수 요전망 및 개발계획 |
| 4 | 수산업법 | 제 74 조 수산진흥종합대책 : 제2항 제 8 호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


| 연 번 | 법 률 명 | 관련 규정 및 내용 |
| :---: | :---: | :---: |
| 5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 수산직불금의 지급 등(제 10 조) 어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지급 |
| 6 | 식생활교육지원법 | 0 식생활교육(제 12 조) <br> $\bigcirc$ 농어촌 식생활 체험활성화,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제24조) |
| 7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제13조) |
| 8 | 영유아보육법 | ○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 린이집(제52조) |
| 9 | 지역문화진흥법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제9조) |
| 10 | 경관법 | $\bigcirc$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산 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 선하는 사업 시행(제16조) |

## 4.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1) 행정계획의 의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내지 종합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대행정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러한 과제는 명령, 금지 및 인.허가 등과 같은 개별적 결정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각종 정책을 장기적 전망에 따라 종합적•장기적 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생긴다.

제 3 장 해양－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다양한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 해를 비교형량하여，＇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 의 조정과 종합화를 통하여 그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 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구상 또는 활동 기준의 설정’이다（목표창조성 + 수단종합성）．${ }^{43)}$

2）행정계획의 등장배경과 기능
행정계획이 현대행정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1）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국가기능의 변화，（2）한정 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행정수요의 효율 적 충족，（3）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료수집•처리기술의 발달로 장래예측의 정확도 향상，（4）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간접 자본의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수단으로서의 필요성，（5）행정기관 상 호간의 협조•조정의 필요라고 하는 요인이 있다．44）

행정계획의 기능은 그 등장배경에 드러나고 있으며，또한 행정계획 은 장기간에 걸친 행정활동을 시간적으로 통합하는 기능（통합기능）과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해조정기능） 을 가진다．정책형성의 중요한 도구인 행정계획의 수립이 행정활동의 공익성•공공성을 담보하는 경향이 있으며，이를 계획의 공공성담보기 능이라 한다．45）

43）김동희，행정법 I［제17판］，박영사， 2011,182 면；정하중，행정법개론［제 8 판］，법문 사，2014，320－321면；박균성，행정법강의［제9판 전면보정］，박영사，2012，193면；류 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제13판］，박영사，2009，333면 참조．
44）김동희，전게서， 182 －183면；정하중，전게서， 320 면；류지대－박종수，전게서， 334 면 참조．
45）大橋洋一，行政法［第2版］，有斐閣，2004，278頁，참조．
（2）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기본계획 현황

아래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중 기 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의 현황을 살펴보면서，행정계획간 조정 내지는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 법률 에서는 2 개，농림축산식품부 공동소관 법률에서는 10 개，환경부 공동 소관 법률에서는 2 개，해양수산부 단독소관 법률에서는 40 개로，총 54 개의 기본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소관 법률상의 기본계획／종합계획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수로조사기본계획’과 「물류정책기본 법」 제 11 조의＇국가물류기본계획’이며，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단독，국 토교통부장관과의 공동수립 기본계획으로 규정되어 있다．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1 |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br>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b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법률 제12738호，2014．6．3．， 일부개정］ |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 <br> ○ 국토교통부장관 <br> ○ 5년마다 수립 <br> 1．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br> 2．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br> 3．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br> 4．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로조사기본 계획（제30조） | ※ 각 기본계획 독 자 적 으로 수립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bigcirc$ 해양수산부장 관 <br> ○ 5년마다 수립 <br> 1. 수로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br> 2.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연구 <br> 3. 수로도서지의 간행 및 보급 에 관한 사항 <br> 4. 수로조사의 구역과 내용 <br> 5. 수로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br> 6. 조사용 선박의 건조(建造), 해양관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br> 7. 수로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br> 8.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br> 9. 그 밖에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2 | 물류정책기본법 <br>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국가물류기본계획(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 10년 단위 5년마다 공동수립 <br>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br>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br>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 한 사항 <br> 3. 운송•보관•하역 •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 로 - 철도 - 해운 - 항공 등 운 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br> 4. 물류시설 - 장비의 수급 -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 공동수립 기 본계획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 에 관한 사항 <br> 6.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 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br>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br>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 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br> 9. 국제물류의 촉진 - 지원에 관 한 사항 <br>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 지원에 관한 사항 <br>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 지역물류기본계획(제14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10년 단위 5년마다 수립 | - |

2)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하는 법률상의 기본계획/종합계획 중 해 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은 10 개이다.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1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 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 합계획(제 5 조) <b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5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현황 |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의 는 개별적으로 수행됨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과 전망 <br>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 전 방향과 목표 <br>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국 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br>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중점 기술 개발 전략 <br>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br> 6.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br>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 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 방침(제6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 확립 지역별 정비계획 시 - 도지사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 비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 시행 |  |
| 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해양수 산부 | 안전관리계획(제6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 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 매년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시 -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
| 4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 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square$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br> $\bigcir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br> $\bigcirc$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br>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 -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br> 2.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r> 3.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br> 4.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 대에 관한 사항 <br> 5.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구 축 등에 관한 사항 | ※ 각 기본계획 독 자 적 으로 수립 |
| 5 | 농어업•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b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어업•어촌 발전계획(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5년 <br>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br>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br>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br>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 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br>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의 조달방안 | ※ 각 기본계획 독자적 수립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5.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br>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 체없이 국회에 제출 ○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  |
| 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정부 <br>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 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 역개발 촉진 <br> - 5년 <br>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 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 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br>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br>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 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br>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br>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에 관한 사항 <br>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br> 6.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br>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 대에 관한 사항 <br>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br>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조달에 관한 사항 <br> 10．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br> 11．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 발 등에 관한 사항 <br> 시행계획 <br>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  |
| 7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 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 수산부 | $\square$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제 5조） <b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br> 1．정비사업의 기본방향 <br> 2．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도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br> 3．추정사업비 <br>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
| 8 | 농어촌정비법 <br> 농림축산식품부，해양 수산부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br> $\bigcir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br> $\bigcirc$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농어촌 생활환 경，농어촌산업，농어촌 관광 휴양자원，한계농지등을 개발 하고 정비 <br> $\bigcirc$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어 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4 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어 촌 발전계획에 따라 수립 <br> 1．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 |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책의 기본 방향 <br> 2. 대상 지역의 현황 <br>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br> 4. 추정사업비 |  |
| 9 |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square$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br> $\bigcir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br> ○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 <br>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 본방향 <br>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 화에 관한 사항 <br>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br> 4. 식품의 품질향상 • 수급 • 인 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br>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br>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br>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 한 사항 <br>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br>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br>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br> $\bigcir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br>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 ※ 농림축산식품 <br> 부장관에 의 <br> 한 계획수립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br>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 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br>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 한 사항 <br>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 의 지원에 관한 사항 <br>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br> 6.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를 위한 사항 <br>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br>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br>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 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br>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의 육성을 위한 사항 |  |
| 10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 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b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5년 <br>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 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br>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 | ※ 각 기본계획 독 자 적으로 수립 |

제 3 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성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br> 3．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br> 가．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br> 나．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br> 다．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br>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br> 라．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에 필요한 시책 <br> 4．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 성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  |
| 11 | 종자산업법 <br> 농림축산식품부，해양 수산부 | $\square$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b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br> ○ 5년 <br> 1．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br> 2．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br> 3．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br> 4．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br> 5．종자 관련 농어가（農漁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 구개발 사업 <br> 6．민간의 육종연구（育種研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br> 7．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 <br> 8．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 <br> 9．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 ※ 각 기본계획 <br> 독 자 적 으로 <br> 수립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산업 지원방안 <br>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
| 1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 환경어업 육성계획 <br> $\bigcir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br> ○ 5년 <br> ○ 친환경농어업 발전 <br>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br>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br>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 량 감축 방안 <br>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br>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 성 방안 <br>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 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br>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br>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br>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br> 10. 제 26 조 및 제 35 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 ※ 각 기본계획 <br> 독 자 적 으로 수립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 <br> 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br>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br> 하는 사항 |  |
|  |  |  |  |

3) 환경부와 공동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과 '습지보전기초계획'의 2 개이다.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1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 에 관한 법률 <br>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정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 5년 <br>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br>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br>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 의 발전 방안 <br> 4. 남극환경보호 연구 <br>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의 육성•지원 <br>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br>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 장비의 개발 <br>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
| 2 | 습지보전법 <br> 환경부, 해양수산부 | 습지보전기초계획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 각각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한다）의 결과 토대 5년 습지보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수립 <br> 1．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br> 2．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br> 3．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 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br> 4．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 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br> 5．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br> 6．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

4）해양수산부 단독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단독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권자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40개이다．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 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 10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 통합관리계획，「국토기본법」에 | ○ 장기계획 <br> ○ 계획간 연계 확보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획에 적합하게 수립 <b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매립기본계획과 관 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에 설치된 지방의 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함) |  |
| 2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5년 <br> 1. <br>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br>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br>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을 위한 투자계획 <br>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 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br>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br>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 육 및 이해증진 방안 <br>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
| 3 | 국제항해선박 및 항 만시설의 보안에 관 한 법률 | 국가항만보안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으로 수행 10년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 안위원회 심의 <br>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br>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장 기 정책방향 <br>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 관의 역할 <br>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 설소유자의 역할 <br>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 - 장비 의 설치 및 경비•검색인력의 배치 <br>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br>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대 응조치 <br>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br>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4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5년 <br>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br>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br>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 과 보호에 관한 사항 <br>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 3 장 해양 - 항만 - 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 요한 사항 |  |
| 5 | 내수면어업법 | 어도종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어도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 5년마다 <br>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 진방향 <br>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br>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 한 사항 <br>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 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br>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 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6 | 도선 법 | 도선사 수급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매년 | ※ 수급계획에 포 함 되 어 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도 선법 시행령 제4조 |
| 7 | 독도의 지속가능한 <br> 이용에 관한 법률 | $\square$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5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심의 <br>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 본구상 및 추진목표 <br>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관한 사항 <br>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 한 사항 <br>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 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br>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br>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br>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br>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br>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br>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에 관한 사항 <br>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 보활동에 관한 사항 <br>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 에 관한 사항 <br> 13. 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br> 14. 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 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
| 8 | 마리나항만의 조성 <br>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 $\bigcirc$ 장기계획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 10년 <br> $\bigcirc$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br> 1.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 책방향에 관한 사항 <br>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br> 3. 마리나항만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br>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br>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
| 9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 10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br>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 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br>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 요성 등 <br>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br>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br>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br>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br>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br>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 ※ 영해기점무 인도서에 대 한 특별관리 계 획 (해 양 수 산부장관)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이용•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10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 본방향을 설정 10 년단위의 계획을 5 년마다 수립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 <br>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br>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br>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 양성에 관한 사항 <br>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 한 사항 <br>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 에 관한 사항 <br>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br>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 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bigcirc$ 장기계획 |
| 11 | 선원 법 | 선원복지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5년 공청회 개최, 의견반영 <br> 1.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 망에 관한 사항 <br> 2.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3. 인력•조직과 재정 등 선원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br> 4. 선원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항 <br> 5.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br> 6.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br> 7.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에 관 한 사항 <br> 8.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br> 9.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 활에 관한 사항 <br>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
| 12 |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5년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1 .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br>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br>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br>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 육훈련에 관한 사항 <br>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6. 소금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br>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 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br> 8. 생산자단체의 육성 -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br>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 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식품업체 간의 상 생협력에 관한 사항 <br>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 에 관한 사항 <br>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br>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 리 등에 관한 사항 <br>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 리 등에 관한 사항 <br>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br>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 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br>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 |  |
| 13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매년 <br> 1. 수산업 <br> 기초과학기술의 구개발 <br> 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 $\bigcirc$ 단기계획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 연구 <br>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수 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br> 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br>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br>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매년 <br>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br>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 <br>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br> 4.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 요한 사항 교육훈련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매년 <br>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br> 2. 기술보급사업의 <br> 시책방향 <br>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br> 4.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 요한 사항 |  |
| 14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 진단 • <br>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 ※ 계획수립기간 에 관한 규정 결여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15 | 수산업법 |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기르는어업의 육성 - 발전 5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br> 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br>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 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br>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 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br> 4.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br>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 성 - 발전에 관한 사항 | 어장이용개발 <br> 계획 시 - 군 • 구 <br> 청장 관할 수면을 종 합 적 으로 이용 - 개발 특별시장 - 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 수산조정위원 회 심의 |
| 16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관리 5년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시 - 도지사 통보, 공고 <br>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br>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br>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br>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 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br>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br>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br> 7. 시 - 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 에 관한 사항 <br>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 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
| 17 |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br> $\bigcirc$ 해양수산부장관 <br> $\bigcirc$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 <br> ○ 고시, 시•도지사에게 송부, 열람 <br>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br>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br> 3. 중기•장기 개발계획 <br>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 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br>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
| 18 | 어장관리법 | 어장관리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 5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br>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br>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한 방안 <br>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br>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어장휴식계획 <br> (시장 - 군수 - <br> 구청장)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19 | 어촌•어항법 | 어촌 - 어항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 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5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br>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 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 <br> 2. 어촌 - 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br>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br>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br>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br>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어항개발계획 (지정권자) |
| 20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 ※ 어촌특화발전 <br> 계획(특별자치 <br> 도 지 사 • 시 <br> 장 - 군수 - 구 <br> 청장) |
| 2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 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 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 5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시 - 도지사 통보, 공고 <br>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 본방향 <br>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3．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br> 4．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 한 사항 <br> 5．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2 | 연안관리법 |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 이용 및 개발 10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br> 1．연안의 범위 <br> 2．계획 수립 대상 지역 <br> 3．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br> 4．연안환경의 보전，연안의 지 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 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br> 5．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 능구의 기본관리 방향 <br> 5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br> 6．제 32 조에 따른 자연해안관 리목표제의 관리 방향 <br> 7．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br>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 정비사업 | ※ 다른 계획 등 과의 관계 <br> （제13조） <br> 1．「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른 도시•군 기본계획 <br> 2．「환경정책기 본법」 제14조 에 따른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 17 조에 따 른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br> 3．「해양환경관 리법」 제14조 에 따른 해양 환경종합계획 <br> 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 생 태 계보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O 10 년 <br>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br> 1．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br> 2．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br> 3．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 용 및 추진계획 <br> 4．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br>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 • 관리기본 <br> 계획 <br> 5．「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 계획 <br> 6．「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br> 7．「어장관리법」 제 3 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 계획 <br> 8．「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br> 9．「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 관리계획 |
| 23 |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5년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 <br> 1．해외수산자원 <br> 환경의 <br> 변화 와 전망 <br> 2．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및 단계별 추진계획 <br>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 사-개발에 관한 사항 <br>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br>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br>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 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br>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24 | 한국해운조합법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10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br> 1.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br>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br> 3. 마리나항만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br>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br>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
| 25 |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 통의 환경 조성 | ※ 장기계획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 10년(타당성 여부를 5년마 다 검토•조정) <br> 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br> 2.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술 의 연구 <br> 3.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투자 계획 <br> 4.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br> 5. 그 밖에 항로표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26 | 항만법 |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의 개발 촉진 및 항만 의 효율적 운영 10년 중앙심의회 심의 <br> 1.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 한 사항 <br>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br>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 한 사항 <br>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br>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 기에 관한 사항 <br> 6.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 비에 관한 사항 <br>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br> 8.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항만 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 관한 사항 <br>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 ※ 장기계획 <br> ※ 「산업입지 <br> 및 개발에 관한 <br> 법률」 산업단지 <br> 개발계획 연계 <br> (제6조제2항)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br>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5년 중앙심의회 심의 <br>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 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 에 관한 사항 <br> 2. 공유수면매립지 - 항만유휴 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 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 성-공급에 관한 사항 <br>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 발에 관한 사항 <br>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br>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 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 한 사항 <br>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 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 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 10년 중앙심의회 심의 <br>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br> 2. 항만 노후화 지표 등 항만 재개발 대상 구역의 선정기준 <br> 3.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및 그 선정 사유 <br> 4.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 <br> 5.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토지 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 녹지계획 등의 기본 구상 <br> 6.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 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27 | 해사안전법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 증진 5년 단위(항행환경개선에 관 한 계획은 10 년 단위) |  |
| 28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 10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br> 1. 해수욕장의 이용 - 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 표에 관한 사항 <br>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br>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br>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br>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 한 사항 <br>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br>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 | ※ 장기계획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29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br>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5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br>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보 호•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 한 사항 <br> 2. 해양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br> 3.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시책 의 방향에 관한 사항 <br> 4. 해양생명자원의 조사 - 연구 • 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br> 5. 해양생명자원 관련 인프라 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br> 6. 해양생명자원의 평가 및 등 록에 관한 사항 <br> 7. 해양생명자원 관련 과학기 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br> 8.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연 구•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 자에 관한 사항 <br> 9. 해양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 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br> 10. 해양생명자원의 정보유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br> 11.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 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30 | 해양생태계의 보전 <br>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보전 •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보전•관리 10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br>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br>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br>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 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br> 4. 해양생태축의 구축 • 추진에 관한 사항 <br>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 협력의 증진 <br>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 <br>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국제협력 <br>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br> 9.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br>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 양성의 보전•관리 <br> 2. 제 25 조제 2 항 각 호의 규정 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 - |  |


| 연 번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 <br> 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br>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 <br>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
|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  |  |
|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  |  |
| 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  |  |
| 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개발 - 이용의 합리화 5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br>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br>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 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 한 사항 <br>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 향에 관한 사항 <br>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 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br>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 업화에 관한 사항 <br>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자원관 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br>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 사에 관한 사항 <br>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 전•관리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33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 10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br>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 측에 관한 사항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계획 | 비 고 |
| :---: | :---: | :---: | :---: |
|  |  | 2.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의 방향에 관한 사항 <br> 3. 해양오염의 예방 및 해양환 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 한 사항 <br> 4.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br> 5. 해양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 에 관한 사항 <br> 6.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과 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br> 7. 그 밖에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 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 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5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br>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br> 2. 오염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br>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 에 관한 사항 <br>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 에 관한 사항 <br>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34 | 해운법 |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정부 |  |


| 연 번 | 법 률 | 기본계획/종합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 5 년 <br> $\bigcirc$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br> 1. 선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br> 2. 선원의 수요•공급과 복지 에 관한 사항 <br>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br>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제 4 장 법제개선방안

## 1．기본법의 정비

（1）기본법의 정비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관 기본법으로는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존재하지만，「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그 제명과는 달리 해양과 수산에 관한 기본 법으로서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이는 「해양수산발전 기본 법」이 「해양개발기본법」에 바탕하는 법률이었다는 입법적 연혁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던 해양에 관한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 관되고，수산에 관한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양 기본법 의 내용이 정리되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법률의 내용정리에 기인 한 것이었다．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 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법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우선 기본법 차원에서의 정비가 필요한 바，개정의 방향으 로는 첫째，두 기본법을 두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용 일 부를 개정하는 방향，둘째，기본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이다．
（2）현행 기본법 체제 유지 및 내용 개정
1）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
첫 번째 방향에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개정이 있을 것이다．또한 기본법의 내용에 수산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면 제명에서＇수산＇을 삭제하고，또한＇해양발전＇이라는 용어가 다 소 어색하기 때문에＇해양기본법＇또는＇해양정책기본법＇으로 제명을 개정하여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있어서는 농어업•농 어촌에서 어업과 어촌을 분리하여 별개의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 다루기로 한다．

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
수산업무가 농림수산부로 통합되었을 때에，「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었던 바와 같 이，기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무가 분리된 경우에는 현행의 기 본법에서 단순히 농업과 어업을 분리하고，농촌과 어촌을 분리하여，현 행 기본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어업•어촌 기본법」 또는 「어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어업＇은 수산물의 포획•채포 또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수산업 전체를 수용하기 에 곤란한 용어법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제명을「수산업•어촌 기본 법」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점

현행 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크게 변 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 정책의 수립•시행을 가능하게 하며，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단 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산에 관 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고 있었던「수산업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 고 기본법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수산업법」에 수산업 전 체에 관련되는 규정이 삭제될 경우，수산업법은 단순히 면허어업，허 가어업，신고어업에 관한 법률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어업은 포 획•채취와 양식으로 구분될 수 있어서 양식에 관한 내용은 신법제정 으로 분리될 수 있다．그렇게 되면 수산업법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관 계 법제 전반이 제•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3）단일 기본법 체계 형성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모든 사무의 기본방향이나 법률의 해석지침 을 규정하여 단일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해양，항만물류，수산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공통원칙으로 규율 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수면（해수면과 내수면 포함）이나 연안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이에 관한 공 통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말하자면 공공성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 규율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의 활동 에 관한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또한 각종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기반조성＇，＇육성•지원＇에 관한 규 정을 기본법에 수용하여 해양수산법제 전반의 개관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해양，항만물류，수산，어촌의 개별 분야에 있어서는 목적 과 수단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 규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법은 총칙규정과 각 행정분야별 규정으로 구성하여 기 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농업과 수산업은 1 차 산업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전체 국토면적에서 농지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토의 상황에서 공간적으로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은 종사자(농민과 어민), 활동의 내용(경작과 어 로•양식), 산물의 특성(농산물과 수산동식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농지와 어장•바다)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규율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상이점으로 인하여 농업과 수산에 관한 법률의 통합과 분리가 용이할 수 있지만, 형식적 분리와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법률의 개정수요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경제적 고려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다.

## (1) 농업으로부터의 분리

농업 및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 률은 그 산물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관련 법률 에서 분리될 수 있다.

먼저, 예를 들어, 유통에 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도매시장제도와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 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특성상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가 곤란하며,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행태 변화, 위생적인 수산물 요구 등

유통환경이 변화하였으며，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단계 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농산물의 유통과 동일한 제도로 수산물의 유통을 규율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수산업 중 양식에 사용되는 수산종자에 관해서는 「종자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종자산업법」은 농작용의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수산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해조류와 같은 식물종자를 포함 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동물종자도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해서는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종자의 특 성을 반영한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법률을 「종자산업법」으로부터 분리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분법을 할 경우에，형식적인 분 법에 그친다면 법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시에는 기존 법률과 다른 입법목적 및 정책수단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한다．

그 밖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 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되지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에는 제 2 장제 3 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 14 조부터 제 19 조까지），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제69조부터 제 78 조까지），제 7 장제 2 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제 88 조부터 제 97조까지）는 수산물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가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46）

46）입법연혁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다가，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시행 2012．7．22，법률 제10885호，2011．7．21．， 전부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어 통합되었다．
（2）본따르기

농업과 수산업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농업관련 법제에서 본따르기 （벤치마킹）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본따르기를 할 필요가 있 다．수산사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던 시기에 법제적으로는 수산물•어업•어촌 관련 법제에 상당한 정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수산사무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업 분야 법 제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령은 적극적으로 본따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2014년 10월 5일 법률 제12825호로 제정된 「수산직접지 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직불제 선정절차 및 지급조건에 관한 것으로서，이는 대통령령인 「농 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47）중 제4장 조건불리 지역직접지불제도를 본따르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48)}$

본따르기의 대상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을 근거 로 하여 대통령령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수산직불금에 대 한 지원근거 뿐만 아니라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제재 및 벌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 법률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49）

47）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 2014．3．18．］［대통령령 제 25259호，2014．3．18．，일 부개정］
48）전게 시행규정 제 3 조는 직접지불제도를（1）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2）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3）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4）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5）밭농업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49）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의 입법형식에 대해 대통령령 내지는 부령으로 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해양수산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14．2， 6－7면 참조．

## 3．해양과 수산 법제의 통합

해양•항만•수산의 정책 연동을 위해서는 해양，항만，수산으로 구 분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규율대상이나 규율분야의 유사성을 중심으 로 법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연동을 촉진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관한 법제는 해양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발 전 기본법」，수산에 관해서는「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구 성되어 있어서，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 계를 통합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 요가 있다．현재，「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안」이 정부제출법률안으로 2014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2）생명자원관리50）

생명자원에 관한 법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생 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에서「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미래창 조과학부 소관법률이며，나머지 두 법률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이다．

50）「어업자원보호법」은 1953년 12월 12일 법률 제298호로 제정되어 1953년 12월 12 일 시해된 법률로서 이는 자원보호에 관한 정책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주권선의 법적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수역내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원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 보기에는 곤란하다．또한 「해저광물자 원 개발법」［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2013．3．23．，타법개정］은 산업통상자원 부 소관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 신설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었지만 현재는 해양수산부 소 관 법률이 되었다．「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을 제외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법 제2조제1호），대상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 밖의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생명자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확보 등을 위해 두 법률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국회 경제과학위원회，해양개발기본법안 심사보고서，1987．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14．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2009．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8．1．

김동희，행정법 I［제17판］，박영사， 2011
류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제13판］，박영사， 2009
박균성，행정법강의［제9판 전면보정］，박영사， 2012
이순태，농어촌의 정주 지원과 지역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한국 법제연구원， 2012

전재경，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체계 정비•개선방안 연구，2002．10，한국 법제연구원

정하중，행정법개론［제8판］，법문사， 2014
최종화•차철표，한국의 수산법제，두남， 2010

大橋洋一，行政法［第2版］，有斐閣，2004，참조．
海洋政策研究財団，総合的海洋政策の策定と推進に関する調査研究一各国 および国際社会の海洋政策の動向報告書，平成26年3月

인터넷 사이트

외교부홈페이지
http://www.mofa.go.kr/incboard/faimsif/mltttrl_popup.jsp?KOEN_ID=54E5 F434F3E57F2749256DDA001D7F34\&ITEM_PARENT_ID=E2094FB02154DB 26492565EC0021E886)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files/documents/OPTF_FinalRecs.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national_ocean_policy_implem entation_plan.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nat_arctic_strategy.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implementation_plan_for_the national_strategy_for_the_arctic_region_-_fi....pdf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0DC0 461\&from=E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0DC0 771\&from=E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08DC0 791\&qid=1416846970991\&from=EN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0]:    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시행 1996.8.8., 법률 제 5153 호, 1996.8.8., 일부개정] 개정이 유 참조.
    2) 전재경,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체계 정비•개선방안 연구, 2002.10, 한국법제연구원, 16 면 참조.
[^1]:    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게 검토보고서, 65 면.
    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게 검토보고서, 66 면.
    7) 정부조직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개정이유 참조.
[^2]:    9)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incboard/faimsif/mlttrrl_popup.jsp?KOEN_ID= 54E5F434F3E57F2749256DDA001D7F34\&ITEM_PARENT_ID=E2094FB02154DB264925 65EC0021E886)
[^3]:    10）통합해양정책TF는 해양정책위원회（Committee Ocean Policy）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고위관료（senior policy－level officials）로 구성되어，환경회의（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의장이 의장을 맡는다．
    11）http：／／www．whitehouse．gov／files／documents／OPTF＿FinalRecs．pdf 참조．
    12） $\mathrm{http}: / / \mathrm{www}$ ．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national＿ocean＿policy＿implementation＿plan．pdf 참조．

[^4]:    13) National Ocean Policy Implementation Plan, Endnotes 3. 참조.
[^5]:    35）농어촌의 개념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순태，농어촌의 정주 지원과 지역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12，87－100면 참조．
    36）지방자치법 제 3 조제 3 항 참조．
    37 ）지방자치법 제 7 조제 3 항 참조．
    38）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 조제 3 항 참조．
    39）지방자치법 제 3 조제 3 항 참조．
    40）지방자치법 제 3 조제 4 항，제 7 조제 2 항 참조．

